

정 관

1952. 2. 15.	제	정
1954. 12. 17.	허	가
1956. 9. 26.	개	정
1961. 6. 25.	개	정
1962. 4. 4.	개	정
1964. 1. 28.	개	정
1965. 9. 25.	개	정
1970. 5. 22.	개	정
1973. 12. 31.	개	정
1976. 6. 21.	개	정
1984. 8. 9.	개	정
1984. 12. 14.	개	정
1985. 4. 2.	개	정
1993. 1. 10.	개	정
1994. 3. 22.	개	정
1997. 4. 11.	개	정
1998. 6. 25.	개	정
1998. 10. 13.	개	정
1999. 12. 29.	개	정
2002. 7. 30.	개	정
2003. 2. 10.	개	정
2012. 2. 21.	개	정
2012. 12. 20.	개	정
2017. 2. 27.	개	정
2017. 8. 25.	수정인가	
2017. 12. 21.	개	정
2019. 11. 28.	개	정
2021. 12. 31.	개	정
2022. 12. 30.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②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K.N.C.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7.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관한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8.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 및 협의
9.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10. 사회복지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흥
12. 공동모금사업의 지원
13.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14.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5. 이 회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16. 그 밖의 이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도협의회등 업무연계) ①이 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하며, 이 회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 회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이 회는 이 회와 시·도사회복지협의회간의 사회복지에 관한 지역별 의견수렴 및 관련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도 협의회장단회의를 개최한다.

④이 회에서 민간복지 정책과 관련되는 주요사안을 결정·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협의회 및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회원을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중 단체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 ②회원중 개인회원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제8조(회원의 가입등) ①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②이 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이 회는 회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당연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

1. 회원으로서 자격상실

2. 사망

3. 법인의 해산 및 파산

② 제1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또는 징계) ① 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2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2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권리행사 방법)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이 회의 정관·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회원의 업무참여) 이 회 회장은 회원에게 주요정보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회원이 협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9인 <개정 2017. 2. 27.>
3. 이사 25인이상 30인이하(회장·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임) ①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삭제 <2017. 2. 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3. 2. 10.>

⑤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균형되게 선임하여야 한다.

1.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장
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자

⑥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⑦선임된 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1. 2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5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5호, 7호 및 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개정 2019. 11. 28.>

제2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2. 10.>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임원의 대우 등) ①이 회의 임원은 회장을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②임원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제2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명예회장은 총회의 결의로, 고문은 이 사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26조(총회) ①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총회 소집등)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1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3. 2. 10. >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①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다른 회원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10인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5조(이사회의 소집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회계연도 1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3. 2. 10. >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삭제 <2019. 11. 28.>

제38조 삭제 <2019. 11. 28.>

제39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5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회장단회의) ①이 회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 회장단회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전문위원회

제41조(전문위원회) ① 이 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42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12. 12. 20.>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자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회관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되는 전세권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은 이를 완료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및 부담금·기

부금과·정부보조금·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45조(회계의 구분등)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4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이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50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2. 21. >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지휘·통할한다.<개정 2017. 12. 21. >

④ <삭제 2012. 2. 21>

⑤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1조(하부조직)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직원) ① 사무처의 직원은 일반직·연구직·기술직·기능직·고용직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신분보장·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수익사업

제53조(수익사업)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과 이 회 정관 제4조 제15호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지원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기본재산) 임대사업
2. 출판사업
3. 조사·연구 등의 용역사업
4. 불용품매입처분사업 <개정 2021. 12. 31.>
5. 그 밖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수익사업

②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54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 재직 인원의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재직인원의 각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10 장 공고방법

제57조(공고의 방법) ①이 회가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종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이 회의 기관지에 실는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실는다.
③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58조(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9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1.10.>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3.22.>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6.25.>

①(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회원 및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회원 및 대의원은 이 정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 그 자격을 종료한다. 다만, 지방협의회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시·도사회복지 협의회 설립허가를 받은 날 각각 그 자격을 종료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등기가 된 날까지로 한다.

④(지방협의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지방협의회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 그 임기를 종료한다.

⑤(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가 종전의 정관 제4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계약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관할 시·도협의회로 이관한다.

⑥(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의 종전의 정관 제4조제9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는 이 정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2항과 동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수행한다.

⑦(자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의 종전의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중 종전의 지방협의회에서 취득 사용하는 자산은 정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협의회의 소유자산으로 한다.

부 칙 <99.12.29.>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3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10.›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0.›

(시행일)이 정관 중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2.27.›

(시행일)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1.›

(시행일)이 개정안은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8.›

(시행일)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1.›

(시행일)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30.›

(시행일)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20., 2021.12.31., 2022.12.30.>

기본재산 목록
(부동산)

(단위 : 천원)

구 분	면적(m ²)	재산가액	비 고
합 계		13,700,000	
토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531.79	2,242,684
건 물	〃	6,827.82	11,129,276 회판(1~6층)